

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9. 29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대선

1. 조례명: 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
2. 제안이유

○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동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2. “사회적 가족”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.
3. “사회적 가족도시”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하동군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인가구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

2.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
3. 1인가구 지원정책의 재원 조달방법

4.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내용이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거 안정 지원사업

2.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

3.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

4.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

5. 비상벨 설치,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

6.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